



부정·불량농약 유통방지로 농업인 피해 예방

비료에 농약성분 혼입 및 농약효과 표시제품 유통근절 위해 단속 강화할 것
관련법규 인지 부족·준법의식 결여 등 여전, 농업인 위한 대승적 노력 있어야



자체검사

농약의 자체검사는 1981년 3월 출하 전 검사를 폐지하고 자체검사제로 전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조회사에서는 생산제품을 포장단위별, 뱃지별 또는 품질관리가 용이한 범위내에서 모집단을 형성하고 모집단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 표기한다.

농약 생산업체는 제품생산에 앞서 원제의 정확한 주성분 함량과 기타 물리 화학적 성질, 증량제와 보조제에 대한 농약품질과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약효보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유통과정에서 경시변화로 인한 성분미달 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의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출하하고 출하된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 성적서를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에 제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접수된 자

체검사성적서는 농약의 검사방법(농진청 고시 제 2004-15호 : 2004. 4. 8) 항목별 검토기준에 의거, 검토한 후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올해 29개 농약제조업(수입)체에서 제출한 자체검사성적서 검토내용을 보면 8백16품목, 1만2천2백48개 제조모집단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원제혼입 초과, 제품 포장단위 변경 미신고 및 자체검사성적서 제출지연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취하였다.

유통농약 품질검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약의 직권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직권검사계획 수립시 제조(수입)회사의 공정한 형평성을 기



하기 위하여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자체검사 성적서를 근거로 전 품목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량 생산품목에 대하여는 가중검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금년에도 제조(수입)업체에서 생산·유통중인 8백80점을 수거·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14점이 불합격됨으로써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품목 제조(수입)업자에게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에게 봉인된 농약의 수거를 지시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한다.

해당제조업체는 시·도지사로부터 봉인결과를 통보 받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거지시를 받은 때는 1월 이내에 봉인된 농약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불합격 농약 모집단의 앞·뒤 모집단에 대하여 12점의 시료를 추가로 수거, 품질을 확인한 결과 기준이상으로 판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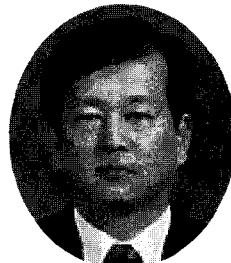
시료 보상금 지급

품질검사용으로 수거한 시료로 인하여 시중 판매업소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시료보상요령이 제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전국 1백39개 판매업소에서 수거한 7백83점에 대하여 시료 보상금 9백34만원을 지급하였다.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전량 수거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약효가 떨어진 농

약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개사에 이르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제품 6백37만병(봉)을 수거하였다.



이천로

농촌진흥청 농업지원과

기간이 경과될 경우

에는 농약의 효과가 떨어져 불필요한 병해충 및 잡초 방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방제 적기를 일설하여 농작물 수량 감소는 물론 품질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포장지가 훼손되었거나, 약액이 누출된 농약 등 불량농약 전량의 수거를 위하여 각 시·도, 농협 및 농약제조업체에 수거를 독려해 왔다. 한편 반품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를 농약을 취급하는 56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와 고발을 함으로써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농약안전사용교육 미이수자 관리

농촌진흥청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고독성 농약 등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등을 제도 개선하여 관리하도록 지적받은바 있어,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진청고시 2004-13호 : 2004. 4. 8)을 고시로 제도를 개선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 미이수자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국 판매업소 5천8백14명 중 2백13명의 미이수자 명단을 시·도로부터 통보



안전사용교육 마이수자에 대한 조사현황

| 마이수 업소수 계 | 조사 결과 | | | | | | | 행정착오 (교육이수자) | |
|-----------------|-------|----|--------------------|------|----|----|----|-----------------|--|
| | 행정처분 | | | 해당없음 | 폐업 | 휴업 | | | |
| | 등록취소 | 경고 | 고독성 농약취급 금지토록조치 | | | | | | |
| 213 | 213 | 3 | 4 | 45 | 16 | 80 | 27 | 38 | |

받아 조사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과 법적조치를 하였다.

부정·불량농약 유통단속 결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약판매업 등록기준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농약법규를 잘 모르는 신규판매업소의 증가와 준법의식 결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라 검증이 되지 않은 유사 친환경자재가 농약으로 유통판매되고 있고 유통과정에서도 신규 영세 판매업소가 도매업자에게 현혹되어 덤핑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준법의식 결여로 인한 판매업자의 위반사례를 보면, 국내 제조생산 품목 라벨을 제거한 후 외국라벨을 부착하여 몇 배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와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수입완제품 농약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특수한 제품을 개포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등 새로운 위반 유형이 발생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에도 농업과학기술원과 협동으로 중앙단속반을 실시하였고 시·도와 함께하는 합동교차단속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77개 시·군에서 1천54개 판매업소를 점검함으로써 부정농약 판매업소 7건, 불량농약판매업소 57건, 법규위반업소 25건 등 모두 89건을 적발하여 등

록권자인 시장·군수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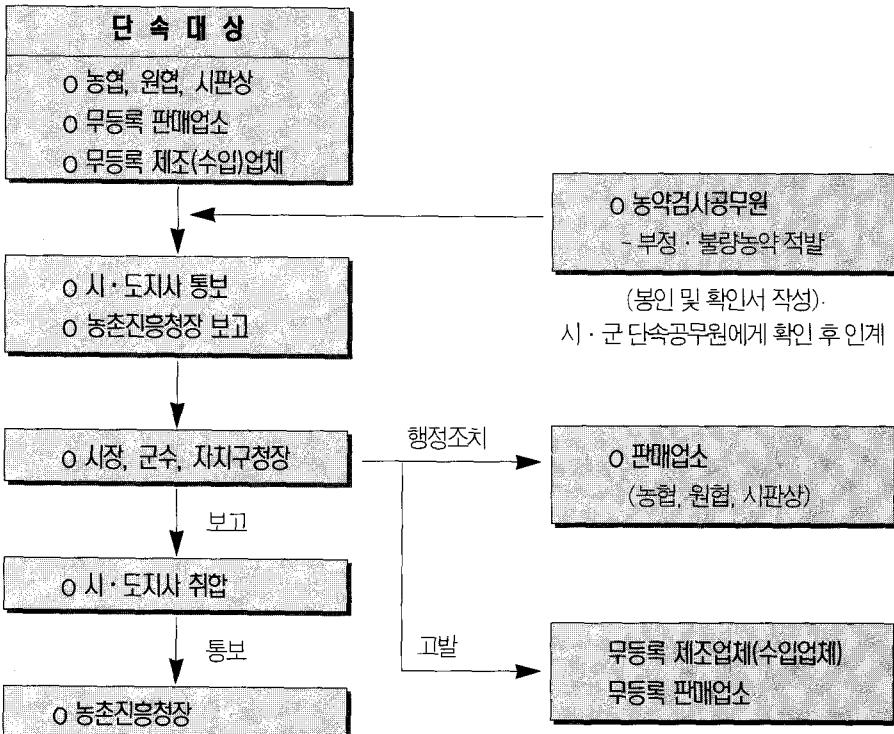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중앙단속반 운영 및 시·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비료에 농약성분 혼입·농약 효과로 판매

비료생산업체에서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비료로 등록한 제품에 농약성분을 혼입하여 유통시킴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를 위반사례별로 보면 첫째, 복합비료액비에 농약성분인 알파사이퍼메스린과 펜프로파스린 성분을 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전문으로 대량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미량요소비료액비에 생장조정제 성분을 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피해 준 사례가 있었고 셋째, 엽면시비용 복합비료에 생장조정제를 혼입하여 유통시킨 수입업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엽면시비용 복합비료에 살균제 농약성분인 디니코나졸을 혼입한 제조업체 등이 있었다. 또 비료로 등록한 제품을 농약의 효능으로 유통시키는 비료제품 및 리후렛을 수거, 조사하여 등록권자

시중 유통농약 단속 체계



인 해당 시·도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농약의 효능으로 유통되는 비료제품은 5개 업체의 6개 제품, 농약성분 및 농약의 효능으로 유통되고 있는 팜프렛(리후렛)은 18개 업체 36제품이며 농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팜프렛(리후렛)은 1개 판매업소 1개 제품 등으로 나타나 적의 조치하였다.

농약 가격표시제 도입·시행

정부에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산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에 농약이 포함하

도록 올해 9월 3일 개정 공포함으로써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산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약가격은 개별 상품 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농약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매 점포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앞으로 농약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이 가격비교를 통하여 판매상에서 제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정보**